# 등록금심의위원회운영규정

제정 2010.12.31.
개정 2011.11. 1.
개정 2014. 3. 1.
개정 2017.12. 1.
개정 2024.12. 1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칙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・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위원회는 대학의 해당연도 적정등록금 책정 시 이를 심의하며, 학교회계 예・결산을 심사・의결 한다. (개정 2014.3.1)

**제3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교직원(법인 추천인사 포함), 학생, 관련전문가를 구성단위로 하며,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한다. 단, 학생위원은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조직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. (개정 2011.11.1., 2014.3.1., 2024.12.1.)

② 제1항에 따라 구성단위별 위원은 위원정수의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한다. (개정 2024.12.1.)

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처장이 되고, 간사는 경리담당직원으로 한다.

④ 간사는 회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기록・보관한다.

**제4조(임기)**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에 의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**제5조(회의)**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(개정 2017.12.1)

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개정 2017.12.1)

③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전달이 가능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. (신설 2017.12.1)

④ 심의는 통지한 사항에 한한다. 다만, 통지 이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출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(신설 2017.12.1)

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(신설 2017.12.1)

**제6조(회의록 작성 및 공개)**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(신설 2017.12.1)

②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

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(신설 2017.12.1)

**제7조(기타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